

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·기각 통지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발급번호
청구인	성명(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
	(전화번호:)		
보상 결정 사항	결정 내용		
	결정 사유		

년 월 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「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[]각하·[]기각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년 월 일

국방부장관 직인

유의사항
1. 손실보상금 []각하·[]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·기각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2. 손실보상금 []각하·[]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○○○과 담당자(전화: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